

## 의학전문대학원기숙사운영위원회세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세칙은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제47조에 의하여 의학전문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한다)에 설치한 기숙사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세칙의 적용범위는 대학원 재학생 및 의학전문대학원 소속으로 기숙사에 입실한 인원 전체로 한다.

**제3조(조직)** ① 위원회는 7인 이상 12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(이하 “학생부원장”이라 한다)을 당연직으로 하며, 위원 중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부장(이하 “학생부장”이라 한다)은 당연직으로 한다.

②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⑤ 사생대표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.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

① 기숙사 기본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

② 기숙사 운영에 따른 규정류에 관한 사항

③ 기숙사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④ 입사자 선정 및 퇴사 처분에 관한 사항

⑤ 기숙사 납부금 책정에 관한 사항

⑥ 기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

**제5조(소집 및 회의)**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회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 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④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, 학년지도교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**제6조(회의결과의 공개)** 위원회의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들이 기숙사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2-3-17~2 제3편 행정

제7조(기타사항)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세칙은 201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.